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45

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 박상웅・윤한홍・주진우

정동만 • 이종배 • 김미애

박덕흠 · 강승규 · 김민전

신동욱 • 이인선 • 조지연

송석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·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 대한 방제비용지원, 민간단체 및 지역역주민의 자발적인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대한지원, 재선충병 발생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림청의 2020~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305만 7,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는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급증하였고, 감염된 시·군·구는 2020년 124곳에 서 2024년 153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.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를 위해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소나무재선충 확 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

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신설, 제16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"조직·인력·예산"을 "조직·인력"으로 하며,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재선충 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	무) ①
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	
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	
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	
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	
를 시행하여야 한다.	
1.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<u>조</u>	1 <u>조</u>
<u>직·인력·예산</u> 및 장비 확충	<u>직·인력</u>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	제1항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대
	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
	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
	는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
	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
	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
	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6조의3(인ㆍ허가 등의 의제)	제16조의3(인ㆍ허가 등의 의제)
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	①
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	
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	
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	
가・신고・협의 등을 받은 것으	

로 본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2항
	제1호에 따른 허가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